



제69차 국제수역 사무국 총회에 다녀와서

이 주 호

농림부 가축위생과장 이주호

서 언

본인은 금년 5월 27일부터 6월 1일까지 프랑스 파리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동물질병기구인 국제수역사무국(OIE)에서 개최된 제68차 OIE 총회에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안수환 해외전염병과장 등으로 구성된 OIE 한국대표단의 대표로서 참석하였다.

본 회의에는 전체 회원국 158개국중 134개 회원국의 대표단과 FAO, WHO, WTO 등 23개 국제기구, 비회원국 6개국 옵저버 등의 가축위생 및 수생동물위생 분야의 정책 연구 분야 관계자 및 관련 조직 단체 관계자들이 약 500여명 참석하였는데 이는 OIE 총회 사상 최대 참가인원이었으며, 프랑스, 우루과이 등 6개국은 농부장관이 직접 참석하여 축사를 하는 등 깊은 관심을 표명했다. 참고로 금년 3월 OIE에 신규로 가입한 북한은 불참하였으나, 주북북한대사관 관계자가 회의자료만 인수해 갔고, 중국도 대만과의 관계를 이유로 불참하였다.

이번 총회의 주요 의제로는 OIE 연간활동 보고; 구제역 규약 개정 및 제주도 청정지역 공인 등 구제역 관련사항; 국제무역에 관한 윤리규정 등 포유동물 국제동물위생규약 개정; 위협평가

절차, 질병별 등급분류 개념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어류위생규약 개정; 각국 가축위생상황 보고; 기타 사항으로 제3차 5개년 중장기전략계획 채택, OIE 연간활동 보고, 회계 및 감사 등이었다.

특히 아국대표단은 작년 우리나라에서 발생된 구제역과 관련하여 발생현황 및 방역조치내용을 상세히 회원국에게 설명하고, 아국의 방역조치가 OIE 및 주요 국가의 방역기준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협의하여 향후 조속한 시일내에 OIE로부터 "구제역 예방접종없는 구제역 비발생국가"로 재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사전점검하는 특별한 임무도 띠고 이번 총회에 참석하였다.

본인은 한국대표단이 금번 제69차 OIE 총회에 참석하여 활동한 내용과 주요 회의내용을 설명하여 우리정부가 무엇을 하고 있고, 가축위생 분야에서 세계 각국의 주요 동향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독자여러분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

1. 구제역 관련 아국대표단 주요 활동내용

아국 대표단은 금번 총회기간중 OIE 구제역위원회의 위원장 Dr. Thomson, 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 Dr. Pearson 등과 공식·비공식적으로

많은 모임을 갖고 아래사항 등에 대하여 협의 하였다.

가. 구제역 청정지위 인정문제 협의

❖ 제주도 청정지역 지위 공인

▶ 지난 1월 OIE의 [구제역 및 기타질병위원회]에 청정지역으로 인정 요청하였던 제주도에 대하여 OIE 전문가들의 검토와 158개 회원국의 회람을 거쳐 이번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청정지역 지위를 부여키로 결정

• 올해 새로이 도입된 절차에 따라 [OIE 청정지위 OIE 인증서]를 수령.

❖ 청정국가 지위 인정문제

▶ 구제역 위원장 Dr. Thomson 등 관계자를 접촉하여 아국의 상황을 설명하고 향후 절차 및 준비사항 등을 문의한 바, 한국의 구제역 박멸조치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에 대해 높이 평가하면서 현재로서는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언급함.

• 다만, 예방접종한 동물들에 대한 혈청학적 예찰, 특별 관리 등 적절한 조치를 적용함으로써 앞으로 있게될 청정지위 평가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조언함

▶ 총회 및 아.태지역위원회의 질병정보 교환 의제에서도 구제역 박멸조치 내용 및 성과를 간략히 설명하고, 준비해 간 최근의 구제역상황 자료(200부)를 참석자들에게 배포하였음.

나. 구제역 관련 규약의 개정논의 대응

▶ 구제역.기타질병위원회 위원장 Dr. Thomson

과 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 Dr. Pearson 등 관계자를 수차례 접촉하여 구제역 비발생국가 인정에 관한 위생규약 개정안(비발생 요건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에 대하여 아국 입장을 설명하고 처리방향을 문의하였음

• OIE 사무국은 금번 회의를 앞두고 우리가 제출한 의견서에 대해 내부 토의를 통해 비발생 기간 요건은 현행 규약을 유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수정안을 작성하여 총회에 제출하겠다고 답변함.

회기중(5.28) 배포된 수정안은 12개월을 요구한 우리 요청을 반영하고 있었으며, 현행 규약의 취약점인 바이러스 잠복상태(임상적으로는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았으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있는 상태)를 다룰 수 있는 근거 마련에 중점을 두고 "구제역 비발생국(FMD free country)"을 "구제역 비감염국(FMD virus infection free country)"로 수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그러나 본회의에서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등 남미국가가 절차상 투명성 부재 등을 문제삼아 강하게 반발(실제적 이유는 구제역 항체가 발견되는 경우 자연감염에 의한 것이 아님을 증명해야 하는 부담이 발생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하는 등 논란 끝에 채택논의를 연기(현행 규약을 유지)하기로 함

다. BSE관련 전문가회의 초청문제

다음달 6.11-14간 당지 OIE본부에서 OIE, WHO, FAO가 공동으로 개최예정인 BSE 및 국제무역 관련 전문가협의회와 관련하여, OIE

사무총장 Dr. Vallat을 접촉하여 동 협의회에 대한 우리의 관심을 표명하고 각 분야(동물위생, 공중위생, 통관)의 전문가가 참석할 수 있도록 초청하여 줄 것을 요청

▶ OIE 사무국은 BSE 협의회에 우리나라 관계관 3명을 업저버 자격으로 초청하는 서한을 전달하면서 회의장소가 매우 협소하므로 복지부가 WHO측에 요청한 업저버 2명의 추가는 어렵다고 밝히고 이해를 구하였음.

• 이에 대해, 우리측은 당초 관련 기관의 전문가가 BSE 전문가 협의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3명에 대한 초청을 희망하였던 것이므로 특히, WHO가 1명을 공식초청할 예정이라고 한다면 추가할 이유는 없으며,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대표단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답변.

라. 검역 및 위생관련 양자간 현안 논의

▶ 특정국가와의 통상현안에 대한 협의를 자제하는 OIE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태국(돼지고기 부산물), 필리핀(돼지고기), 러시아(돼지고기), 대만(돼지고기) 등 수출추진 대상국가 대표를 잇따라 접촉, 우리 관심사를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하였으며, 특히 일본 대표단과는 별도의 회합을 갖고 OIE 등 국제논의에서 상호간 협력키로 의견을 같이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하였음.

• 또한, 호주산 2차 도입생우에서 블루팅병 항체가 발견된 것과 관련하여 호주 수의국장 Dr. Murray를 접촉하여 동 견에 대한 구체적인 경위파악 및 관련 정보제공을 요청하였는 바, 귀국후 동 내용을 자국 농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관계부서에 전달하겠다고 답하였음.

▶ 한편, 캐나다 대표는 우리대표단에게 사슴만성소모성질병(CWD)과 관련한 양국 전문가의 상호방문 등 긴밀한 정보교환을 제안하였으며, 핀란드 대표는 자국의 위생.방역실태 파악을 위해 우리 관계관을 초청할 의향이 있음을 밝혔음

2. 2000년 전세계 가축질병발생 현황

OIE List A 질병

❖ 구제역

▶ 이집트: 2000년 6월 Fayoun governorate에서 1건 발생

▶ 나미비아: 2000년 8월 SAT1형 발생

▶ 남아연방: Duran항에 일시정박중인 선박폐수에 의해 발생 O형 발생

▶ 스와질랜드: 2000.11월 도축장(Manzini근처) 계류중인 수입소에서 SAT1발생, 예찰도중 인접 남아연방(Mpumalanga주)에 발생, 200년 12월 스와질랜드의 발생경계 지역북부에서 발생, 경계지역 서부로 확산되어 남아연방 Kruger국립공원까지 확산

▶ 브라질: 2000년 7월-10월 Rio Grande do Sul주에서 O형발생, 2001년 5월 동일주에서 재발생

▶ 아르헨티나: 2000년 8월 Formosa주로 밀반입하던 소에서 A형 발생, 혈청학적 예찰결과 Corrientes와 Entre Rios주에 발생확인. 2001년 3월 여러지역으로 확산. 백신접종정책 재도입 시행

▶ 파라과이: 2000년 8월 국경지대에 백신접종 완충지대 설치

- ▶ 우루과이: 2000년 9월 O형 발생, 2001년 3월 아르헨티나로부터 유입 재발생, 긴급 백신접종
- ▶ 극동아시아: 2000년 3월-5월에 일본, 한국, 몽고 및 러시아에 O형 발생, 2001년 2월과 3월 몽고 동부지역에서 추가발생
- ▶ 그리스: 2000년 7월 동부지역에서 Asia1형 발생
- ▶ 영국: 2001년 2월 O형 발생, 북아일랜드, 프랑스, 아일랜드공화국 및 네덜란드 발생
- ▶ 사우디아라비아: 2000년 5월에 SAT2형 발생, 6월 인근 쿠웨이트에서 발생

❖ 수포성구내염

- ▶ 콜롬비아에서의 발생증가

❖ 돼지수포병

- ▶ 이탈리아에서 발생

❖ 우역

- ▶ 파키스탄에서 유일하게 발생보고
- ▶ 이란 : 백신접종 중단
- ▶ 레바논,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잠정적 비발생 국가선언

❖ 가성우역

- ▶ 아시아 및 아프리카 일부지역에서만 발생
- ▶ 방글라데시: 2001년 3월 발생

❖ 우폐역

- ▶ 나미비아에서 발생증가(99년 4건에서 2000년 18건)
- ▶ 잠비아: 2000년 2월 1건 발생
- ▶ 포르투갈: 99년 1건 발생이후 추가발생없음

❖ 렘피스킨병

남아연방: 발생증가(99년 200건에서 2000년 4000건)

아이보리코스타(Cote d'Ivoire)에서 3건, Mauritius(9월) 1건발생

❖ 리프트밸리열병

사우디아라비아와 예멘의 사람에서 발생

❖ 블루팅

튀니지아: 99년 12월에서 2000년 1월, 6월에서 9월에 발생

알제리: 2000년 6월에서 9월 발생(튀니지아로부터 매개곤충 유입발생추정)

이탈리아: 2000년 8월 사르디니아섬에서 최초 발생, 2000년 11월 시슬리와 칼라브리아섬에 추가발생.

스페인 Balearic섬과 프랑스 Corsica섬에서 발생(2000년 10월에서 12월)

* 상기의 발생국의 블루팅은 모두 혈청형 2임.

불가리아: 99년에서 발생한 이후 추가발생 없음

❖ 양두/산양두

그리스에서 2000년 11월 1건발생, 추가발생 없음.

❖ 아프리카마역

남아연방: 2년간 추가발생없어 비발생지역산 말 수출재개선언

❖ 아프리카 돼지콜레라



- ▶ 이탈리아 사르디니아섬에서 발생보고
- ▶ 포르투갈은 99년 발생이후 추가발생없음

❖ 돼지콜레라

- ▶ Mauritius에서 2000년 8월 발생
- ▶ 브라질: 비발생국 선언
- ▶ 영국: 2000. 8월에서 11월 발생(동일 종돈장 유래 농장). 2000.12월 방역조치 해제

❖ 고병원성 가금인플루엔자

- ▶ 이탈리아: 99년 12월에서 2000년 4월까지 발생. 약 4000건발생 1100만수 가금류 살처분. 2000년 10월 비발생국 선언계획

❖ 뉴캐슬병

- ▶ 이탈리아: 2000년 5월이후 총 256건 발생, 의무적 백신접종실시

OIE List B 질병

❖ 소백혈병

- ▶ 스페인, 스웨덴: 질병부재 선언

❖ 소해면상뇌증 및 스크래피병

- ▶ 스페인: 자국내 발생상황보고
- ▶ 노르웨이: 스크래피발생사항(2000년 5건, 2001년 1건) 보고

여타 질병

❖ West Nile fever

- ▶ 미국 : 2000년 8월에서 10월사이, 북동부지역 말 60두 감염 23두 폐사 또는 살처분, 21건 사람건 발생

- ▶ 프랑스: 남부지역에 제한, 2000년 9월에 첫 발생 11월 최종 발생 총 54두의 말 감염되었으나 사람 감염사례는 없음.

3. 총회 결의사항

결의사항 I: 2000년 OIE 활동에 관한 사무총장 연례보고서 및 2000년 및 2001년초 세계동물질병현황 보고서 승인

위원회는 2000년 OIE 활동에 관한 사무총장의 연례보고서와 2000년 및 2001년초의 전세계동물질병현황 보고서를 승인함.

결의사항 II: 2000년 OIE 관리, 활동 및 행정업무에 관한 사무총장 보고서 승인

위원회는 제74차 회계연도(1999. 1. 1~12.31) OIE 관리, 활동 및 행정업무에 관한 사무총장의 보고서를 승인키로 결의함.

결의사항 III: OIE 제74차 회계연도 회계보고서 승인

위원회는 제74차 회계연도(2000. 1. 1~12.31) 회계 보고서를 승인키로 결의함.

결의사항 IV: OIE 제76차 회계연도 예산 수입 및 지출

위원회는 제75차 회계연도(2002. 1. 1~12.31) OIE 예산 수입 및 지출 계획을 결의함.

결의사항 V: 2002년도 OIE회원국 회계 분담금

위원회는 OIE 회원국에 대한 2002 회계연도 기부금 총액을 아래와 같이 설정함을 결의함.

제1범주 : 102,175 EUR	제2범주 : 81,740 EUR
제3범주 : 61,305 EUR	제4범주 : 40,870 EUR
제5범주 : 20,435 EUR	제6범주 : 12,261 EUR

결의사항 VI : 외부감사 재임명

외부감사 재임용에 관한 재정규정 Article 12.1에 따라서 위원회는 OIE 외부감사로서 Mr. J. Berthe 경을 2001년 기간중에 재임명하기로 결의함.

결의사항 VII : OIE에 자발적으로 기부해준 회원국 정부에 대한 감사

Director General은 OIE의 프로그램 수행에 자발적으로 기부해준 미국, 스위스, 쿠웨이트, 일본, 이탈리아, 프랑스, 아르헨티나의 정부에 진심으로 감사함.

결의사항 VIII : 저개발국가에 의한 OIE 정규예산에 대한 기부

위원회는 유엔 경제사회이사회(United Nations Economic and Social Council)가 'least developed countries(LDCs)'로 분류한 회원국이 OIE 활동에 전적으로 참여하도록 조장할 필요성을 고려하고, OIE 정규예산에 대한 LDCs의 기여에 관한 문서 69 SG/19를 고려하여,

1. International Committee에 의해 채택된 six-category scale에 따라서 유엔 경제사회이사회에 의해 LDCs로 분류된 회원국으로부터 총 기여부과금의 50% 만 요구하고자 함.
2. 자발적인 근거에 의해 category를 변화시키기 위해 그들의 기여능력보다 더 높거나 더 낮은 category에 분류된 회원국에게 제안하고자 함. 이는 빠르면 2002년에 유효할 수 있음.

결의사항 IX : 2001년에서 2005년까지의 기간을 위한 Work Programme

위원회는 아래사항을 결정한다.

1. 사무총장은 Work Programme의 방침에 근거한 연간프로그램과 이에 상응하는 예산을 준비함.
2. 회원국은 정규적 기여금과 자발적 기여금 및 보조금의 지불형식으로 Work Programme이 실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제공함

결의사항 X : OIE와 World Bank간의 협정

관련된 전반적인 관심사항에 대하여 협력이 국제수역사무국과 세계은행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고, 두 기관간의 협정이 행정위원회(administrative commission)의 심의후 사무총장이 결재함으로써 승인(69 SG/20)된 것으로, 위원회는 이 문서의 협약과 OIE를 대표한 의장의 결재를 승인하기로 결정한다.

결의사항 : 국제동물위생규약 개정안

위원회는 아래사항을 결정한다.

1. Document 69 SG/12/CS1의 위생규약 부칙 III, IV, VI-VIII을 영어, 불어 및 스페인어로 신뢰성있는 문구로 아래와 같이 보완하는 것을 채택하기로 결정하였다.
 - 1.1. 부칙 III(국제교역에서의 의무와 윤리)에서, "official control programme"의 정의 말미에 있는 "within a zone"라는 표현을 "within a zone or zones"로 바꾼다.
 - 1.2. 부칙 VI(소해면상뇌증 검색 및 감시체계)에서, 2 b)항의 콤마뒤에 있는 괄호안의 단어를 없앤다.

결의사항 : 국제수생동물위생규약 개정안

위원회는 아래사항을 결정한다.

1. Document 69 SG/12/CS4 A의 부칙 III(일부 변경)과 Document 69SG/12/CS4 B의 부칙 IV-VII을 영어, 불어 및 스페인어로 신뢰성이 있는 문구로 보완하는 것을 채택키로 하였다.

결의사항 XIII : 구제역 OIE/FAO 국제전문가회의의 권고사항

위원회는 다음사항을 권고한다.

1. OIE/FAO 국제 전문가회의의 다음 권고사항(2a, 2b, 3, 4 및 5)을 참조한다.
2. 국제동물위생규약과 구제역 및 기타 질병위원회(FMD and other epizootics commissions)는 권고사항 1과 2c를 참조할 것을 요청하고, OIE 동물위생규약을 적절하게 변경하도록 제안한다.

결의사항 XIV : 제3차 국제수생동물위생규약 및 수생동물질병 진단매뉴얼 채택

위원회는 International Aquatic Animal Health Code 및 Diagnostic Manual for Aquatic Animal Diseases 제4차 편집본을 채택키로 결의함.

결의사항 XV : 회원국의 소해면상뇌증 상태의 인증

❖ 위원회의 결의사항

1. BSE 청정상태에 대한 평가를 code 요구조건에 따라 평가하기를 바라는 회원국 대표는 OIE 에게 정식 요구서로 제안하여야 한다. 의장은 적절한 시기에 규약위원회와 구제역(FMD) 및 기타질병 위원회에 이에 대한 검토를 요청한다.

2. 위원회는 자료제출을 촉진시킬 수 있는 지침을 만들어 각 회원국에 제시하여야 한다. 이 지침은 현행 위생규약의 조건에 근거한다.
3. 회원국의 대표는 BSE청정 조건에 부합한다는 해당국의 공식발표를 입증할 수 있는 정보를 제시하여야 하고, 거기에는 위생규약에 명시된 위험도 평가를 포함하여야만 한다.
4. 대표단은 OIE절차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야 하고, 서류심사 및 전문가 회의 소집 등과 같은 비용, 전문가들에 의한 요구조건 등에 대하여 해당국가는 평가결과에 관계없이 전적으로 부담하여야 한다. 그러나 OIE 의장은 저개발국들에 대한 비용절감에 대한 협상의 권한을 가진다. 회원국 대표단의 반응과 실무전문가들의 권고사항은 위원회에서 평가하여, 그 결과를 해당 국가(지역)에 제안할 것이다.
5. 위원회의 권고사항은 제 67회 정기총회에서 채택된 결의안 XVI에 제시된 대로 평가사항을 제출 것이다.
6. 국제위원회에서 BSE청정국으로 인증받은 국가는 매년 bulletin에 게재될 것이다.
7. BSE 청정회원국의 대표들은 회원국이 동일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지를 인지할 수 있는 회원국 상태와 그 기준을 매년 11월에 공식서한으로 재확인하여야 한다. 만약 BSE가 발생할 경우 중앙사무국으로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결의사항 XVI : 무역 감염으로부터 청정한 회원국의 인정

❖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결정한다.

사무총장은 간행물에서 규정집 제4.5.1.1. 항목에 따라 아래의 무역 청정국 리스트를 공지한다.

알바니아	독일	뉴질랜드	알제리	그리스	노르웨이
안도라	과테말라	파나마	앙골라	가나	파라과이
아르헨티나	하이티	페루	호주	온두라스	필리핀
오스트리아	헝가리	폴란드	바바도스	아이슬랜드	포르투갈
벨기에	인도네시아	루마니아	볼리비아	아일랜드	싱가포르
보스니아/ 헤제고비나		이태리	슬로바키아	보츠와나	자마이카
슬로베니아	브라질	일본	아공	불가리아	한국
스페인	캐나다	라오스	스와질랜드	칠레	라트비아
스웨덴	콜롬비아	레소토	스위스	코스타리카	리투아니아
대만	크로아티아	룩셈부르크	트리니다드와	토바고	쿠바
마다가스카	튀니지	키프로스	말레이시아	우크라이나	체코
몰타	영국	덴마크	Mauritius	미국	에쿠아도르
멕시코	우루과이	엘살바도르	몰디브	바누아트	에스토니아
모로코	베네수엘라	핀란드	나미비아	베트남	메케도니아
네덜란드	유고슬라비아	프랑스	뉴칼레도니아	짐바브웨	

이와 관련하여 국가 혹은 특정 지역이 우역 청정지역으로 인정받은 회원국의 대표는 그들의 지위와 기준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음을 매년 11월에 편지로 확인해주어야 한다. 만약에 우역이 이러한 지역에 발생한다면 즉시 각국 중앙정부에 통보하여야 한다.

결의사항 XVII : 회원국의 구제역 지위에 대한 인정

❖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결정한다.

사무총장은 간행물에서 규정집 제2.1.1. 항목에 따라 백신이 접종되지 않은 구제역 청정 회원국에 대한 리스트를 아래에 공지한다.

알바니아	과테말라	뉴칼레도니아	[아르헨티나]	가나
뉴질랜드	호주	그리스	노르웨이	오스트리아
하이티	파나마	벨기에	온두라스	폴란드
불가리아	헝가리	포르투갈	캐나다	아이슬랜드
루마니아	칠레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코스타리카
[아일랜드]	슬로바키아	크로아티아	이태리	슬로베니아
쿠바	일본	스페인	키프로스	라트비아
[스와질랜드]	체코	리투아니아	스웨덴	덴마크
셈부르크	스위스	엘살바도르	다가스카	우크라이나
에스토니아	말타	영국	핀란드	Mauritius
미국	마케도니아	멕시코	[우루과이]	[프랑스]
네덜란드	바누아투	독일		

사무총장은 간행물에서 규정집 제2.1.1. 항목에 따라 백신이 접종되지 않은 구제역 청정 지역으로서 다음의 회원국에 대한 리스트를 공지한다.

보츠와나, 콜롬비아, 한국, 나미비아, 필리핀, [남아프리카]

사무총장은 간행물에서 규정집 제2.1.1. 항목에 따라 백신이 접종되지 않은 구제역 청정 지역으로서 다음의 회원국에 대한 리스트를 공지한다.

브라질, 콜롬비아

사무총장은 간행물에서 규정집 제2.1.1. 항목에 따라 백신이 접종되지 않은 구제역 청정 지역으로서 다음의 회원국에 대한 리스트를 공지한다.

파라과이(2001년 5월 31일에 OIE 국제위원회에서 채택)

결의사항 XVII : OIE 표준 연구실의 권한의 변화에 대한 제안

❖ 위원회는 다음사항을 결정한다.

OIE 표준 연구실의 권한에 대한 수정 제안, 즉, 2000년 11월 1-3일에 있었던 표준위원회 모임에 대한 보고서에 첨부된 것처럼 샘플을 제공한 회원국의 대표에게 질병 발생 사실을 통보하는 것을 포함하는 제안을 채택한다. 회원국의 대표는 즉각적으로 OIE 표준연구실에서 받은 통보내용을 특히, 포유류, 조류, 벌 등의 리스트 A 혹은 B 질병 그리고 OIE에 통보할 만한 질병이나 수증 동물에 대한 중요한 다른 질병에 대해서 OIE의 중앙사무국에 알려야 한다.

결의사항 XIX : OIE 표준연구실과 협력센터의 연구 손위 결정과 자금 지원

❖ 위원회는 다음사항을 결정한다.

1. 표준위원회에게 동물질병 분야에서 중요도 높은 연구 목록을 작성하는 권한을 위임한다. 여기서 작성된 목록은 2002년의 국제 소위원회에서 채택 여부를 결정한다.
2. 동물질병분야에서 중요도가 높은 연구과제에 자금을 지원하게끔 OIE 사무총장은 세계은행과 다른 자금 공여자와 함께 국제 농업 연구에 관한 자문그룹의 secretariat과 협상한다. (2001년 5월 31일에 OIE 국제위원회에서 채택)

결의사항 XX : 수의공중보건과 교역에 있어서 신출 질병이 미치는 중요성

사람, 동물 및 동물부산물의 국제간 이동량이 증가하면서 새로운 질병이 발생할 것이고, 회원국의 수의기구는 시기 적절하게 세계적으로 발생하는 전염병의 정보를 제공받아 하 하고, 또한 새로운 질병에 대한 기술적인 지원과 훈련도 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

공중보건에 영향을 줄 동물 질병이 발생할 경우 많은 국가들이 공중보건당국과 협력할 계획이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않다. 이와 같은 상황을 고려할 때

1. OIE는 회원국들이 신출질병을 신속히 보고하도록 권고하며,
2. 또한 회원국의 수의기구가 공중보건당국과 보다 밀접한 유대와 협력관계를 구축하도록 돕는데, 이는 민첩하고 효과적으로 공중보건학상 중요한 동물질병발생에 대해 대처할 수 있게 한다.
3. OIE는 회원국들이 신출질병의 대처를 돕도록 OIE 전문가들의 목록에 이 분야의 전문가를 포함시키며,

4. 표준위원회는 문제가 되는 질병에 대한 유용한 진단법을 손쉽게 평가하는 체계를 발전시키며,
5. OIE는 회원국의 수의당국에 질병정보를 제공한다.

결의사항 XXI : 수의행정을 지원하는데 통신매체의 역할

동물 및 동물 부산물의 국제교역상 통제와 조절은 신속하고, 유연하면서 국제적인 양질의 기술적, 과학적 정보에 기초하여야 하는데, 정보와 통신기술의 발달은 수의당국의 기능과 과학적, 기술적, 업무적 생산성을 향상시키며, 통신과 정보관리의 투명성과 우수성의 확보라는 문제는 특히 위기의 상황에서 국가적, 국제적 문제로 대두될 것이며, 회원국과 OIE는 위의 통신 및 정보관리를 위해 적절한 인력 및 기술적, 재정적 지원을 확보해야 하며 이 분야의 기술적인 훈련은 필수적이다.

위와 같은 상황을 고려할 때

1. 정보통신의 진흥 및 관리는 특히 질병예찰 체계, 위험도 관리, 긴급상황대처행동, 가축 생산자와 소비자에 대한 정보등을 강화하는데 있어서 수의행정업무의 우선순위 중의 하나이다.
2. 회원국은 위기상황과 평상시의 필요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 정보통신체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자신들의 필요와 인력, 기술적, 재정적 가용자원을 평가해야 한다.
3. 회원국의 정부당국은 수의행정의 특별한 통신 목표를 적절히 지원해야 한다.
4. OIE를 포함한 국제기구는 개발도상국들이 국가적인 또는 국제적인 요구에 대응할 수

있도록 수의분야의 통신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원하여야 한다.

5. 회원국정부는 수의사를 교육시키는 기관이 교육 과목안에 정보통신과목을 포함시키도록 해야 한다.
6. 회원국의 수의행정기구는 적절하고 신뢰할 만한 정보를 그들의 교역상대국이나 인접국, 국제기구나 조직 등에게 신속히 전달할 역량을 강화해야 하며 언론매체와의 관계도 강화해야 한다.
7. OIE는 회원국들이 새로운 정보와 communication 과학기술(technologies)의 알맞은 사용에 기초하여 Communication 과 정보계획들을 설계하는데 도움을 제공한다.
8. OIE는 회원국과 국제언론에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정보 용량을 증대시켜나감에 그것에 의하여 전 세계동물위생에 대한 준거조직으로서 공적인 이미지를 강화시키게 된다.

결의사항 X : 회원국들의 우폐역(CBPP)에 대한 평가 (Recognition of CBPP Status)

1. 제 63차 총회동안, 국제위원회는 No. XIII 결의안에 대해서 승인을 하였고 그 결의안은 우폐역(CBPP)의 역학적 예찰 제도에 대한 추천된 표준안으로 채택하였다.
2. 우폐역의 역학적 예찰 제도에 대한 Recommended Standards는 부록 3.8.2로서 OIE 국제 동물위생규약내에 발표되었으며 이러한 Standards는 회원국들이 우폐역 비발생국으로 선포하는데 진로를 제공해준다.
- 3.c 절은 회원국들이 우폐역비발생국가로



선언 되기위해 OIE에 적용할 수 있는것을 명시하고 있다. application 은 부록3.8.2내에 약속된 것처럼 보조자료를 포함할 것이다. 규약은 구제역과 다른 전염병위원회가 이러한 application들을 검토하고 국제 위원회에 그것의 추천(recommendations)을 보고하는데 절차를 제공한다

3. 위원회의 추천은 제67차 국제위원회 총회기간동안 채택된 No XVI의 결의안내에 설명(약술)된것에 대한 의견을 위해 회원국들에게 제출될 것이다.
4. OIE에 의해 발표된(발행된)정보는 회원국들의 수의사무국에 의해 만들어진 declaration(고지)으로부터 유래 된다. OIE는 부정확한 정보나 역학적상태의 변경된 상황 혹은 비발생을 선언한 시점다음에 바로이어져 즉시 Central Bureau 에 보고되지않은 다른 중요한 사건들에 근거하여 국가의 질병상황에 대한 부정확한 발표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

결의사항 XXIII : 동물질병에 대한 OIE 범주구분

❖ 위원회는 아래사항을 결정한다.

1. FMD와 다른 Epizootics Commission, International Animal Health Code Commission 및 Fish Disease Commission이 5개 지역위원회로부터의 권고에 기초하여 질병분류시스템을 완성하기 위해 함께 작업할 것을 요청하였다.
2. 지역위원회의 다음 권고를 새로운 분류의 기초로서 사용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 a) OIE는 현재의 수생동물질병의 분류를 포함하여 동물의 질병에 대한 현재의 분류시스템을, 하

나의 질병목록을 작성하기 위해서지만 두 개의 새로운 범주로 개정한다.

- 인수공통전염성과 역학적인 중요성으로 인하여 즉각적인 통보(24시간 이내)가 필요한 동물질병
- 주기적인 통보(적어도 매년 또는 필요할 경우 이보다 자주)가 필요한 동물질병

b) 즉각적인 통보의 범주에 들어갈 어떤 동물질병의 포함은 단지 point (2a)에 언급된 특성과 특히 위험성이나 광범위한 전파(직접 또는 매개체를 통하여)등의 가능성에 기초되어야 한다.

c) 짧은 기간내에 목차의 질병과 관련하여 OIE International Animal Health Code 및 Aquatic Animal Health Code에서 chapter는 위(2a)에 지적된line을 따라 OIE가 개정과 재검토한다.

d) 회원국은 목차의 질병의 최초발생이나 그 질병의 비발생국으로 분류된 국가 또는 국가의 일부지역에서 새로운 질병이 나타났을 경우 24시간 이내에 통보한다.

e) OIE는 과학적자문조직체로서 질병통제전략에 부합하여 적시에 양질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통보의무에 기초한 질병 리스트작성의 기초적인 목적에 대한 OIE회원국의 인식을 고양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한다.

f) OIE는 질병데이터베이스의 개발과 강화를 지속하고, 회원국이 범세계적 동물질병 상황에 관한 최신의 양질의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3. FMD와 다른 Epizootics Commission, International Animal Health Code Commission 및 Fish Disease Commission이 70차 General Session에 International Committee로 제출하기 위한 합동

보고를 준비할 것을 요청한다. Commission 들은 위의 지침에 기초한 동물 질병의 목록을 이 보고서에 포함시키기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 진행상황에 대한 개요와 새로운 분류 시스템을 실행하기 위한 예정표를 제공해야 해야한다.

4. Commission의 report는 필수적인 변화를 주기 위한 적절한 방법을 결정할 수 있도록 2002년 2월에 Administrative Commission에 제출되어야 한다.

결의사항 XXIV : BSE에 대한 국제 동물위생규약의 미래 개정판

International Committee은 draft Chapter 2.3.13에 대해 제 69차 정기 총회때 논의했으며 status를 결정하기전에 적용되는 위험도 평가, 예찰, 모니터링시스템 뿐만 아니라 BSE에 대한 Zones 혹은 나라들의 현재 범주체계에 대한 관점을 표명했다.

1. Code Commission은 능동적 예찰체계(active surveillance systems)에 대한 최근의 정보를 고려하여 Appendix 3.8.3을 향상시키고 재검토하는 것을 고려한다. 그것은 Article 2.3.13.1에 요구되는 위험도 평가(risk assessment)의 결과에 관한 다른 예찰 체계의 사용에 대한 지침을 제공해야한다.

2. Code Commission은 Article 2.3.13.1에 요구되는 위험도 평가에서 증명된 위험요소와 cases의 조사 모두를 고려하여 Code Chapter에서 BSE에 관한 zones이나 나라의 현재 자격체계(qualification system)을 재검토한다.

결의사항 XXV : 항생물질 내성

❖ 위원회는 다음사항을 권고한다.

1. 항 미생물 저항성과 관련한 정보의 전파에 능동적인 격려와 참여 그리고 동물과 인간 건강에 미칠 잠재적인 부정적 영향과 관련하여 수의분야에서의 항생물질의 신중한 사용을 증진시키기 위해 회원국은,

- OIE가 준비한 이 분야에 대한 지침을 따르게 하고
- 항생물질 함유 수의약품에 대한 효과적인 제한절차를 확보토록 하며
- 항생물질 함유 수의약품의 질적 수준을 검정할 능력을 갖춘 국가 또는 지역개념 수준의 실험실을 보유토록 하며
- 수입되는 항생물질 함유 수의약품에 대한 효과적인 통제력을 갖추도록 하며
- 항생물질 함유 수의약품의 동물체에 대한 사용을 국가 법률에 따라 관리하게 한다.

2. 국제수역사무국(OIE) 사무총장은 아래의 역할을 수행한다.

항생물질 내성분야에 대한 기본지침을 마련하고 다음 OIE 총회에 진도보고서를 제출하도록 OIE 특별위원회에 요청

식용 가능한 축종에서의 특별한 항생물질의 사용 결과로 동물체에 내성균종이 출현함으로써 인간 및 동물위생에의 위험에 대한 위험도 분석을 수행하는 적절한 특별전문과학자 위원회를 발족

필요하다면, 수의약품협력센터(Collaborating Centre for Veterinary Medical Products)로 하여금 OIE 회원국에 기술적인 지원을 제공토록 함

결 언

금번 회의는 영국등 유럽지역과 우리나라등 아시아 지역의 구제역 신규발생과 국제교역에서의 동물위생규약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는 시기라는 점 등이 부각되어 참여회원국이 130개국을 넘고, 참석인원도 500명을 넘는 등 사상 최대규모의 회의였다.

각 회원국은 본 회의를 자국의 가축위생상황을 설명하고 각국 수의당국 책임자들을 직접 접촉하여 동물 및 축산물의 교역에 있어 그간 상호간에 해결하지 못했거나 이해가 부족한 사안에 대하여 직접 접촉하여 해결을 도모하는 장으로서 적극 활용하였다.

우리대표단은 본 회의에 적극 참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금번 아국에 발생된 구제역의 확산 차단 및 조기근절을 위하여 각국 전문가들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였고, 우리나라가 그간 실시한 구제역 방역조치 사항들이 향후 아국이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는 구제역 비발생국가"로 등재될 수 있도록 OIE 당국 및 전문가들과 사전에 협의하고 조언을 구하는 등 매우 유익하게 활용하였다.

예상과는 달리 구제역 관련 규약의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우리나라는 당초 일정대로 금년 9월 셋째주에 개최예정인 구제역위원회에 청정국 지위 인정을 요청할 수 있으므로 이를 위한 준비를 착실히 하는 것이 필요하며(공식인정은 총회에서 이루어짐), 청정국 지위인정을 추진하고 있는 BSE, 돼지콜레라에 대하여도 OIE 관련절차 및 요건을 고려하여 적절한 준비가 필요하다.

제주도의 구제역 청정지역 인증은 향후 평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는 있으나, 우제류 동

물등의 수입측면에서는 아국이 지역개념을 인정한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제주도 산돈육의 대일수출과 내륙산 한우 등의 제주도 반입문제 등은 보다 신중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앞으로 우리정부는 WTO/SPS 협정에 의거 동물 및 축산물의 국제교역시 적용되는 위생기준을 제정하는 기구로 지정된 국제수역사무국 총회 및 각 분과위원회에 적극 참여하여 아국의 입장을 반영하여 국익을 도모하는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다.

단, 2000년말 기준 158개 회원국중 아국이 지급하는 분담금은 전체 6단계 분류중 최하위에서 한 단계 높은 5단계에 그침으로서 우리나라 국력에 비하여 발언권 및 활동반경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이 현실임을 감안하여 다음 총회부터는 최소한 4단계의 분담금을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OIE 사무국은 WTO 출범 이후 활동범위가 지속 확대되고 있으며 많은 새로운 과제가 대두되고 있어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는 회원국들의 기여중대가 필요함을 호소하고 있는 바, 향후 구제역, BSE 등 청정국 지위인정 등 원활한 활동을 위해서는 우리나라도 분담금 증액 등 적절한 대응이 필요할 것이다. 끝으로 금번 우리나라에서 발생되어 축산업계에 엄청난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야기하고 있는 구제역이 하루빨리 종식되어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구제역 비발생국가로 재인정되어 중단되었던 수출도 재개되고 동질병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차단하여 국내축산업 기반이 더욱 강고하게 구축될 수 있도록 수의사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 글을 맺는다.

